

의안번호	2217048
의 퇴 인	윤준병의원
회 답 일	2026.3.27.
추계번호	26D1029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결과

- (일부추계) 개정안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에 위원회를 설치하고 각종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6년 1억 8,100만원 등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 동안 총 3억 1,400만원(연평균 6,300만원)으로 추계됨

[표 1]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6~2030년

(단위: 백만원)

구분	2026	2027	2028	2029	2030	합계	평균
위원회 설치	10	19	19	19	19	86	17
각종 계획 수립	171	-	-	57	-	228	46
합 계	181	19	19	76	19	314	63

주: 본 추계는 추계가 가능한 일부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만 유사사례를 준용하여 추계한 것으로, 전체적인 재정소요액은 추계된 금액을 상회할 수 있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I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14조의2 (전북자치도 사무의 단계적 이양 및 자치권 강화 특례)	-전북자치도는 기초자치단체의 자율성 확대를 위하여 전북자치도의 사무 중 특정 사무를 제외하고는 관할구역 시·군에 이양하여야 함 -이양할 사무를 발굴하고 심의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으로 자치분권심의위원회를 둠 -도지사는 사무 이양으로 시·군에 과도한 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병행하여야 하며, 사무이양 시행 계획 수립절차 및 후속조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도 조례로 정함	의무규정
2	안 제25조의2 (농촌활력촉진특구 지정)	-도지사는 농촌활력을 창출하고 민간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농촌활력촉진특구를 지정할 수 있으며, 국가와 도지사는 촉진특구로 지정된 지역에 대해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음	재량규정

3	안 제25조의4 (동물복지축산농장 지원에 관한 특례)	-도지사는 「동물복지법」에 따라 인증받은 동물복지축산농장에 대하여 축사시설 개선에 필요한 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음	재량규정
4	안 제25조의5 (농업재해 지수보험 도입 및 운영에 관한 특례)	-도지사는 농업재해 지수보험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고, 지수보험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업재해 보험기금을 설치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음	재량규정
5	안 제25조의6 (농업·농촌 발전기금 설치·운용)	-도지사는 지역 간 격차 해소와 농업·농촌의 발전을 위하여 농업·농촌 발전기금을 설치·운용하여야 하며, 기금의 재원 및 용도 등은 도조례로 정함	의무규정
6	안 제28조의2 (그린바이오산업 데이터 활용에 관한 특례)	-전북자치도에서 그린바이오산업 관련 데이터의 생성·관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은 도지사가 수행할 수 있으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도지사가 수행하는 그린바이오산업 데이터 생성 등의 업무가 국가 그린바이오산업 육성 정책의 추진에 기여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음	재량규정
7	안 제30조의2 (에너지 자립도시 조성)	-국가는 재생에너지 확대 및 분산에너지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전북자치도가 재생에너지 및 성장 유망산업을 기반으로 한 에너지 자립도시로 조성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여야 함	의무규정
		-국가는 에너지 자립도시에 안정적인고 효율적인 재생에너지 공급을 위한 분산에너지사업, 지능형 전력망 구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전력산업기반기금,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 예산을 지원할 수 있음	재량규정
8	안 제41조의4 (노후거점산업단지의 에너지 자립 및 탄소중립 지원 특례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전북자치도 노후거점산업단지 입주기업이 공장, 유희 부지 등을 활용하여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 등을 설치하거나 구축하고자 하는 경우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음 -도지사는 발전설비 등의 설치 및 구축을 원활히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설비 취득에 따른 취득세 및 재산세를 감면할 수 있음	재량규정
9	안 제41조의5 (벤처기업 투자 및 정책금융 지원에 관한 특례)	-국가는 전북자치도의 산업구조 고도화와 신산업 육성을 위하여 전북자치도 소재 벤처기업 및 창업기업에 대하여 벤처투자, 정책금융 및 보증지원을 종합적으로 추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실증사업, 규제특례사업 등을 지원할 수 있음	재량규정

10	안 제41조의6 ~안 제41조의 11(인공지능 클 러스터 조성 특 례 등)	-도지사는 인공지능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연구 개발 거점, 기반시설, 재생에너지를 유기적으로 연계한 클러스터(이하 “클러스터”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음 -국가는 인공지능데이터센터, 차세대 인공지능 반도체 기반 시설 등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음 -국가는 도지사가 인공지능 및 인공지능기술의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기업, 기관이나 단체의 기능적·물리적·지역적 집적화에 대하여 인공지능집적단지로 지정하고 행정적·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음 -국가는 도지사가 조성한 인공지능집적단지를 지역에 효과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하여 관련 업무를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전담 기관을 지정할 수 있으며, 전담기관의 운영 및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에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음 -국가는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데이터 활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인공지능데이터뱅크를 구축하고, 국가 또는 도지사가 지정하는 기관이 이를 운영하도록 할 수 있으며, 국가는 인공지능데이터뱅크의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음 -국가와 전북자치도는 특화산업도시 통합육성 기본계획에 따라 특화산업도시 간 공동연구개발, 실증사업, 기업 유치 등에 대하여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음	재량규정
		-국가는 인공지능 클러스터 내 국가 인공지능데이터센터 등을 직접 구축·확충하거나 지원하여야 함 -도지사는 첨단산업의 연계와 융복합 촉진을 위하여 3년마다 특화산업도시 통합육성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의무규정
11	안 제14조의13 (미래자동차 부 품산업 특화단지 의 지정 등)	-산업통상부장관은 관할 구역의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도지사가 신청하는 경우 해당 지역을 미래자동차 부품산업 특화단지로 우선 지정할 수 있으며, 국가는 지정된 미래자동차 부품산업 특화단지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음	재량규정

12	안 제41조의14 ~안 제41조의 16(도심항공교 통 시범운용구역 의 지정 등에 관 한 특례 등)	-국토교통부장관은 도지사가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시범운용구역의 지정을 요청하는 경우 이를 우선적으로 검토하여야 하며, 국가는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음 -우주항공청장은 도지사가 항공우주산업 특화단지 지정을 요청하는 경우 해당 지역을 항공우주산업 특화단지로 우선 지정할 수 있으며, 국가는 지정된 항공우주산업 특화단지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음 -국가는 우주산업의 육성과 우주산업 클러스터 조성을 위하여 전북자치도 관할구역 내 우주 국가산업단지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국가는 우주산업 관련 기업 및 기관에 대한 보조금 지원, 자금 대출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음 -우주항공청장은 도지사가 우주산업 투자진흥지구 지정을 요청하는 경우 해당 지역을 우주산업 투자진흥지구로 우선 지정하고 조성할 수 있으며, 국가는 지정된 우주산업 투자진흥지구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음	재량규정
13	안 제41조의17 ~안 제41조의 19(모빌리티 미 래도시 조성 등)	-국가는 전북자치도에 모빌리티 미래도시를 조성할 수 있음 -도지사는 전북자치도 관할 내의 복수의 산업단지, 연구단지 및 실증구역 등을 연계한 미래모빌리티 클러스터를 지정할 수 있으며, 국가는 지정된 모빌리티 특화도시에 대하여 규제특례, 첨단모빌리티 시범사업, 전문인력 양성 등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음	재량규정
14	안 제41조의20 (산업전환을 위 한 재정 지원 등)	-국가는 이 법에 따른 산업전환을 추진함에 있어 기존 국가 산업 전환, 탄소중립 및 에너지 전환 관련 재정사업과의 연계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단계적으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재량규정
15	안 제41조의21 (지능형 로봇산 업 육성을 위한 지원 특례)	-국가는 전북자치도 관할구역에서 추진되는 지능형 로봇의 연구개발, 실증, 보급 및 사업화를 위하여 도지사가 요청하는 사업 또는 업무를 수행하는 자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출연, 융자 또는 그 밖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음	재량규정
16	안 제42조의2 (문화지구의 지 정에 관한 특례)	-도지사는 문화예술 진흥과 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른 문화시설이 집적된 지역, 군사시설 이전이 확정된 부지 및 그 주변지역 등을 문화지구로 지정할 수 있으며, 국가는 지정된 문화지구의 성공적인 조성을 위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음	재량규정
17	안 제42조의5 (보존자원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례)	-도지사는 희소하거나 보존가치가 높다고 인정되는 자원 등을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존자원으로 지정·관리할 수 있으며, 보존자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그 관리 또는 보호 등에 필요한 경비를 부담하거나 보조할 수 있음	재량규정

18	안 제46조의2 ~안 제46조의3 (인공지능-문화 콘텐츠 융합 국 가산업단지 조성 등에 관한 특례 등)	-국가는 전북자치도에 과학기술·디자인·문화예술·인문사회 등 다양한 학문 분야 간의 교류와 융합에 기반을 둔 문화산업을 발전시키는 데 필요한 복합기술의 연구개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국가산업단지 내에 차세대 이동통신망, 초고성능 컴퓨팅 센터, 인공지능 창작 전용 데이터센터 등 차세대 디지털 기반시설 구축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음 -국가산업단지에는 실감형 콘텐츠, 생성형 인공지능 창작, 게임, 영상, 웹툰, 애니메이션, 미래형 문화기술 관련 기업을 유치하며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 등을 감면할 수 있음 -도지사는 한류 콘텐츠 복합 공연시설 등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른 문화시설을 건립할 수 있으며, 국가는 관련 법령에 따라 건립 등에 관한 비용 일부를 지원할 수 있음 -도지사는 이스포츠 상설 경기장, 영상 제작 시설 등 문화산업 관련 시설을 건립할 수 있으며, 국가는 건립에 관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음	재량규정
19	안 제46조의4 (도서·연안 관광 개발을 위한 환 경 규제 특례)	-도지사는 친환경 관광 진흥지구를 지정할 수 있음 -도지사는 진흥지구 내 개발 사업의 환경성 및 국가유산 사전영향협의를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관계 기관 공무원과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통합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함	재량규정
20	안 제49조의3 (스마트수산업 선도지구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례)	-도지사는 전북자치도 내 정보통신기술을 기반으로 한 스마트수산업 육성을 위하여 스마트수산업 선도지구(이하 “선도지구”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으며, 해양수산부장관은 도지사가 육성지구를 지정한 경우 수산업 기반시설 구축 및 개선, 스마트수산업 관련 연구개발 등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음	재량규정
21	안 제49조의8 ~안 제49조의9 (지방어항 지원 에 관한 특례 등)	-도지사가 지정·관리하는 지방어항에 대하여 국가 등이 계획하는 해양수산 정책 등 연계 개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대상어항에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음 -국가는 전북자치도 관내 섬 지역 주민의 생활안정과 정주여건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음	재량규정
22	안 제64조의2 (글로벌 물류경 쟁력 확보 시책 수립 등)	-정부는 전북자치도가 국내·외 물류체계 및 고부가가치 융복합 물류 활동의 촉진, 제조·유통산업 등과의 연계강화 등 글로벌 물류거점으로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국제물류진흥지역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국제물류진흥지역 지정을 할 수 있음	재량규정

23	안 제67조의2 (외국인 근로자의 정주 여건 개선 및 지원 특례)	-도지사는 전북자치도 내 농업업 및 제조업 분야 외국인 근로자의 안정적인 체류와 정착을 위하여 외국인 근로자 지원 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함	의무규정
		-국가는 외국인 근로자의 주거 복지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농어촌 지역에 외국인 근로자 전용 기숙사 또는 공동 숙소를 건립하거나 개량·보수하는 경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음 -도지사는 외국인 근로자와 고용주 간의 언어 소통 및 갈등 해결을 지원하기 위하여 외국인 근로자 지원 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국가는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음	재량규정
24	안 제74조의2 (투자금융주식회사 설립 등에 관한 특례)	-전북자치도는 정책펀드의 기획·운영, 공공자산에 대한 관리·처분·개발, 전략사업에 대한 투자 등의 업무 수행을 목적으로 하는 기관을 출자하여 설립·운영할 수 있음 -전북자치도는 지방소멸대응, 지역혁신성장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를 설립하고 출자할 수 있음	재량규정
25	안 제74조의3 (투자기업에 대한 지원 특례)	-국가는 전북자치도 내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투자진흥지구 내 입주기업에 대한 보조금의 국가 지원 한도와 분담비율을 상향할 수 있음	재량규정
26	안 제76조의2 (정부출연연구기관 지역조직 설립에 대한 특례)	-도지사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구회에 지역조직 설립을 요청할 수 있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해당 지역 조직이 설립될 수 있도록 우선적으로 노력하여야 하며, 도지사는 지역조직이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함	의무규정
27	안 제83조의3 ~안 제83조의5 (공공의료재단의 설치 및 운영 등)	-도지사는 전북자치도 주민의 건강 증진과 보건의료 여건 개선 및 광역 의료체계 확충을 위하여 공공의료재단을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함 -도지사는 전북자치도 관할구역 내 산후조리원의 수요와 공급 실태 등을 고려하여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국가는 공공산후조리원 운영 및 시설 확충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우선적으로 하여야 함	의무규정
28	안 제83조의6 (인공지능 약자 보호 및 교육)	-국가는 노인, 장애인 등 디지털 취약계층을 위해 음성, 동작, 뇌파 등으로 제어 가능한 배리어 프리(Barrier-free) 인공지능 인터페이스를 보급할 수 있으며, 전북자치도 내 모든 공공시설과 대중교통에 인공지능 기반 실시간 수어 통역 및 시각 보조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음	재량규정
29	안 제83조의7 (폭력학대신고대응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례)	-도지사 및 시장·군수는 아동·노인·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학대 예방 및 피해자 보호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폭력학대신고대응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도지사 및 시장·군수는 폭력학대신고대응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함	의무규정

30	안 제84조의2 (기업간 협력 활성화 위한 산업연대협력체 구축 특례)	-도지사는 지역 전략산업의 연대·협력 생태계 조성을 위하여 기업·대학·연구기관 등이 참여하는 산업연대협력체를 지정하여, 공동 연구개발(R&D), 핵심기술 및 지식재산권의 상호 공유·활용 등의 사업을 통합 지원할 수 있음	재량규정
31	안 제84조의4 (중소기업 종사자 공동복지사업에 관한 특례)	-정부와 도지사는 중소기업 종사자의 복지 향상 및 지역 인재 유치·정착을 위하여 지역기업, 소상공인, 서비스업체 등이 참여하는 광역 단위 공동복지사업을 운영·지원할 수 있으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동복지사업의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재정을 지원할 수 있음	재량규정
32	안 제84조의5 (소상공인에 대한 국가 종합지원 특례)	-국가는 전북자치도 설치로 인하여 경영환경의 변화, 상권 구조의 재편 등으로 영향을 받는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과 지속 가능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으며, 국가는 금융적·정책적 지원 특례를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음 -국가는 전북자치도 지역 내 소상공인 및 골목상권의 매출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사랑상품권 및 온누리상품권의 발행·유통·할인지원 등 소상공인 지원사업을 확대·운영할 수 있음	재량규정
33	안 제91조의2 ~안 제91조의3 (기후위기 적응센터 지정 및 평가 등에 관한 특례 등)	-도지사는 지방기후위기적응대책의 수립·시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전북자치도기후위기적응센터를 지정할 수 있으며, 국가 및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을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음 -국가는 종전의 전북자치도 관할 내의 탄소중립 지원센터에 대하여 필요시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음	재량규정
34	안 제97조의4 (전북자치도 돌봄특구 지정)	-도지사는 영유아 및 아동, 장애인, 노인 등의 돌봄을 위한 전북자치도 돌봄특구를 지정·운영할 수 있으며, 국가는 돌봄특구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음	재량규정
35	안 제97조의6 (특화형 공공임대주택에 관한 특례)	-도지사는 특화형 공공임대주택을 공공건설임대주택 또는 공공매입임대주택 방식으로 공급할 수 있음	재량규정
36	안 제102조의2 (혁신도시 개발에 관한 특례)	-국토교통부장관은 전북자치도의 혁신도시 개발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음	재량규정
37	안 제102조의5 (지역역세권 활성화 특례)	-국토교통부장관과 도지사는 역사와 역사주변지역을 연계하여 역사 네트워크를 통해 다양한 경제활동 및 가치가 창출되는 산업생태계를 조성될 수 있도록 시책을 마련하여야 하며, 국가, 전북자치도 및 철도사업자는 철도경제권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기반시설 설치를 지원할 수 있음	재량규정

38	안 제102조의6 (주민자치 조직 의 전문성 강화 및 사무국 설치)	-주민자치회의 효율적인 업무 수행과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주민자치회 내에 시·군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국 또는 전담 사무 인력을 둘 수 있으며, 도지사 및 시장·군수는 사무국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음	재량규정
39	안 제115조의3 ~안 제115조의4(지역발전 인력 양성 특례 등)	-국가와 전북자치도는 지역산업과 연계된 우수 인력을 양성하고 이들의 지역 내 정착을 유도하기 위한 행정·재정적 지원을 포함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하며, 도지사는 우수 인력의 유입 및 체류 지원을 위하여 주거, 교육, 문화 시설 등 정주여건 조성을 위한 시책을 우선적으로 추진하여야 함	의무규정
		-도지사와 도교육감은 전북자치도 관할 구역에 대학, 연구기관, 기업 등이 공동으로 입주할 수 있는 지역산업혁신 캠퍼스를 조성·운영할 수 있으며, 도지사와 도교육감은 지역산업혁신 캠퍼스의 조성·운영과 대학 및 산업체 간 연계 교육과정 운영, 전문 인력 양성 프로그램 등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음	재량규정
40	안 제115조의10(대학 및 지역 동반성장 지원 특례)	-국가는 전북자치도 설치 및 운영에 따라 대학의 교육·연구·산학협력 기능이 지역 발전과 연계·확장될 수 있도록 필요한 제도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음	재량규정
41	안 제115조의12(지방공기업 및 지역전략산업 고등학교 졸업자 고용촉진 특례)	-도지사는 매년 정규직 신규 채용 인원의 100분의 20 이상을 고등학교 졸업자로 채용하는 등의 고용 노력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는 지방공기업 등에 대하여 인건비 일부 지원, 지방세 감면 등 세제 혜택 등의 지원을 할 수 있음	재량규정
42	안 제115조의13(지역 전략산 업 연계학과 글 로벌 인재 유치 지원)	-전북자치도는 외국인 유학생의 지역 내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역 내 취업과 연계한 교육훈련 보조금 지급, 외국인 유학생의 지역 내 정주여건 개선 사업 등을 시행할 수 있음	재량규정
43	안 제115조의14 ~안 제115조의16(인재 고용 지 원 및 촉진 등)	-도지사는 미래신산업 분야의 인재 유입과 고용 안정을 위하여 미래신산업 분야 취업 희망자에 대한 직업 훈련, 지역 인재 신규 채용 기업에 대한 고용촉진장려금 지급 등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이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음 -도지사는 도조례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핵심 인재에 대하여 주거비 지원정책을 시행하거나 임대주택을 우선 공급할 수 있음 -국가는 전북자치도의 주거지원 시책에 필요한 재원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음 -도지사와 도교육감은 미래신산업단지 또는 연구개발특구 인근에 우수 학교를 유치하거나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특별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음	재량규정

Ⅲ.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

1.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여부	비고(추계 미 실시 사유)
1	안 제14조의2(전북 자치도 사무의 단계 적 이양 및 자치권 강 화 특례)	○	(자치분권심의위원회 설치)
		×	(행정·재정적 지원 관련)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사무이양의 범 위를 추정하기 곤란함
2	안 제25조의2(농촌 활력촉진특구 지정)	×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어 추계하기 곤란함
3	안 제25조의4(동물 복지축산농장 지원에 관한 특례)	×	지원의 대상 및 농장별 지원 규모 등을 추정하기 곤란함
4	안 제25조의5(농업 재해 지수보험 도입 및 운영에 관한 특례)	×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시범사업의 규 모, 보험료 지원 범위 및 규모 등을 추정하기 곤란함
5	안 제25조의6(농업 · 농촌 발전기금 설 치·운용)	×	기금의 용도 및 재원 등을 도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 기금 조성 및 기금 운용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추정하 기 곤란함
6	안 제28조의2(그린 바이오산업 데이터 활용에 관한 특례)	×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지원의 대상이 되는 사업 및 정책의 내용, 지원 규모 등을 추정하기 곤란함
7	안 제30조의2(에너 지 자립도시 조성)	×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지원의 대상이 되는 사업 및 정책의 내용, 지원 규모 등을 추정하기 곤란함
8	안 제41조의4(노후 거점산업단지의 에너 지 자립 및 탄소중립 지원 특례 등)	×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지원의 대상이 되는 사업 및 정책의 내용, 지원 규모 등을 추정하기 곤란함
9	안 제41조의5(벤처 기업 투자 및 정책금 융 지원에 관한 특례)	×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지원의 대상이 되는 사업 및 정책의 내용, 지원 규모 등을 추정하기 곤란함
10	안 제41조의6 ~안 제41조의11(인 공지능 클러스터 조 성 특례 등)	○	(특화산업도시 통합육성 기본계획 수립)
		×	(행정·재정적 지원 관련)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사무이양의 범 위를 추정하기 곤란함

11	안 제14조의13(미래 자동차 부품산업 특화단지의 지정 등)	×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지원 대상 및 지원 규모 등을 추정하기 곤란함
12	안 제41조의14 ~안 제41조의16(도심항공교통 시범운용 구역의 지정 등에 관한 특례 등)	×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지원 대상 및 지원 규모 등을 추정하기 곤란함
13	안 제41조의17 ~안 제41조의19(모빌리티 미래도시 조성 등)	×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지원 대상 및 지원 규모 등을 추정하기 곤란함
14	안 제41조의20(산업 전환을 위한 재정 지원 등)	×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어 추계하기 곤란함
15	안 제41조의21(지능형 로봇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 특례)	×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지원 대상 및 지원 규모 등을 추정하기 곤란함
16	안 제42조의2(문화지구의 지정에 관한 특례)	×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어 추계하기 곤란함
17	안 제42조의5(보존자원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례)	×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도조례에 따라 보존자원을 지정하도록 하고 있어 지원 대상 및 지원 규모 등을 추정하기 곤란함
18	안 제46조의2 ~안 제46조의3(인공지능-문화콘텐츠 융합 국가산업단지 조성 등에 관한 특례 등)	×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지원 대상 및 지원 규모 등을 추정하기 곤란함
19	안 제46조의4(도서·연안 관광개발을 위한 환경 규제 특례)	0	(통합심의위원회 설치)
20	안 제49조의3(스마트수산업 선도지구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례)	×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지원 대상 및 지원 규모 등을 추정하기 곤란함
21	안 제49조의8 ~안 제49조의9(지방어항 지원에 관한 특례 등)	×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지원 대상 및 지원 규모 등을 추정하기 곤란함
22	안 제64조의2(글로벌 물류경쟁력 확보 시책수립 등)	0	

23	안 제67조의2(외국인 근로자의 정주 여건 개선 및 지원 특례)	O	(외국인 근로자 지원 계획 수립)
		×	(경비 지원 관련)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비용 지원과 관련하여 지원 대상 및 지원 규모 등을 추정하기 곤란함
24	안 제74조의2(투자금융주식회사 설립 등에 관한 특례)	×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출자 대상 및 출자 규모 등을 추정하기 곤란함
25	안 제74조의3(투자기업에 대한 지원 특례)	—	미대상: 국가와 특별자치도 간 비용 부담에 관한 내용으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을 통합한 국가 재정 측면에서 추가적인 재정지출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26	안 제76조의2(정부출연연구기관 지역조직 설립에 대한 특례)	×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지원 대상 및 지원 규모 등을 추정하기 곤란함
27	안 제83조의3 ~안 제83조의5(공공의료재단의 설치 및 운영 등)	×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공공의료재단 및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여부, 시설 규모 및 지원 규모 등을 추정하기 곤란함
28	안 제83조의6(인공지능 약자 보호 및 교육)	×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지원 대상 및 지원 규모 등을 추정하기 곤란함
29	안 제83조의7(폭력학대신고대응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례)	×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신고대응센터 설치 범위 및 지원 규모 등을 추정하기 곤란함
30	안 제84조의2(기업간 협력 활성화를 위한 산업연대협력체 구축 특례)	×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어 추계하기 곤란함
31	안 제84조의4(중소기업 종사자 공동복지사업에 관한 특례)	×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지원 대상인 사업 내용을 추정하기 곤란함
32	안 제84조의5(소상공인에 대한 국가 종합지원 특례)	×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어 추계하기 곤란함
33	안 제91조의2 ~안 제91조의3(기후위기 적응센터 지정 및 평가 등에 관한 특례 등)	×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기후위기 적응센터 및 탄소중립 지원센터에 대한 지원 규모 등을 추정하기 곤란함
34	안 제97조의4(전북자치도 돌봄특구 지정)	×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어 추계하기 곤란함

35	안 제97조의6(특화형 공공임대주택에 관한 특례)	×	특화형 공공임대주택 공급사업 실시여부 및 공급 규모 등을 합리적으로 추정하기 곤란함
36	안 제102조의2(혁신도시 개발에 관한 특례)	×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지원의 대상이 되는 사업의 내용, 지원 규모 등을 추정하기 곤란함
37	안 제102조의5(지역역세권 활성화 특례)	×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지원대상 및 지원 규모 등을 추정하기 곤란함
38	안 제102조의6(주민자치 조직의 전문성 강화 및 사무국 설치)	×	시·군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자치회 내 사무국 또는 전담 인력을 두도록 하고 있어 사무국 설치 범위 및 지원 규모 등을 추정하기 곤란함
39	안 제115조의3 ~안 제115조의4(지역발전 인력 양성 특례 등)	×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지원대상 및 지원 규모 등을 추정하기 곤란함
40	안 제115조의10(대학 및 지역 동반성장 지원 특례)	×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어 추계하기 곤란함
41	안 제115조의12(지방공기업 및 지역전략산업 고등학교 졸업자 고용촉진 특례)	×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지원대상 및 지원 규모 등을 추정하기 곤란함
42	안 제115조의13(지역 전략산업 연계학과 글로벌 인재 유치 지원)	×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어 추계하기 곤란함
43	안 제115조의14 ~안 제115조의16(인재 고용 지원 및 촉진 등)	×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지원대상 및 지원 규모 등을 추정하기 곤란함

2.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

- 안 제14조의2에 따른 자치분권심의위원회 및 안 제46조의4에 따른 통합심의위원회¹⁾의 경우 회의참석수당을 추계하고, 추계기간 동안 수당은 변화하지 않는다고 가정함
 - 자치분권심의위원회는 연간 2회 개최되는 것으로 가정하고, 민간위원 수는 전체 위원 20명 중 12명으로 가정²⁾
 - 통합심의위원회는 연간 2회 개최되는 것으로 가정하고, 전체 위원 수는 유사한 성격의 통합심의위원회 사례를 준용하여 30명으로 하며³⁾, 이 중 민간위원수는 20명으로 가정
 - 위원회 민간위원의 회의참석 및 안전검토수당은 30만원⁴⁾으로 가정
- 안 제41조의11에 따른 특화산업도시 통합육성 기본계획, 안 제64조의2에 따른 국제물류진흥지역기본계획 및 안 제67조의2에 따른 외국인 근로자 지원 계획 수립에 소요되는 비용은 유사 추계에 활용한 2024년 대전광역시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예산 금액을 준용함
 - 특화산업도시 통합육성 기본계획은 3년을 수립주기로 하고 있으므로 추계 첫해인 2026년과 2029년에 수립하는 것으로 가정하고, 국제물류진흥지역 기본계획 및 외국인 근로자 지원 계획은 5년을 수립주기로 하여 추계 첫해인 2026년에 수립하는 것으로 가정함
-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하는 제정안의 부칙을 고려하여 추계 기간은 2026년부터 2030년까지로 함

1) 개정안 제46조의4(도서·연안 관광개발을 위한 환경 규제 특례) ① 도지사는 섬 지역 및 연안의 고유한 생태·문화를 활용한 관광 개발을 위하여 친환경 관광 진흥지구를 지정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진흥지구 내 개발 사업의 환경성 및 국가유산 사전영향협의를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 등 관계 기관 공무원과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통합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하며,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협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2) 개정안 제14조의2에 따르면 자치분권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민간 전문가와 시·군의 입장을 대변하는 인사를 과반수 이상 포함하도록 함

3)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의3(새만금개발통합심의위원회의 설치 등) ① 제11조의2에 따른 통합계획의 승인과 관련하여 도시계획·교통·재해 등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 및 심의하기 위하여 새만금개발청에 새만금개발통합심의위원회(이하 "통합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6.)

② 통합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 및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4) 법령 등에 의하여 설치된 위원회에 참석한 민간위원에 대하여 1일당 20만원을 지급하되, 회의시간이 2시간 이상일 경우에는 1일 1회에 한하여 10만원 내에서 추가 지급할 수 있음(기획예산처, 「2026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3.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

가. 각종 위원회 설치(안 제14조의2 및 안 제46조의4)

- 추계의 전제에 따라 자치분권심의위원회와 통합심의위원회의 민간위원 수를 각각 12명, 20명으로 하고, 회의참석수당은 30만원으로 추계기간 동안 변동이 없는 것으로 가정함
- 개정안에 따라 자치분권심의위원회와 통합심의위원회를 설치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6년 1,000만원 등 5년간 8,600만원으로 추계됨

[표 2] 각종 위원회 설치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6~2030년

(단위: 백만원)

구분		2026	2027	2028	2029	2030	합계
수당 지급 횟수	자치분권심의위원회 (12명×연 2회)	12	24	24	24	24	108
	통합심의위원회 (20명×연 2회)	20	40	40	40	40	180
	소계(a)	32	64	64	64	64	288
회의참석수당(b)		0.3	0.3	0.3	0.3	0.3	0.3
계(a×b)		10	19	19	19	19	86

주1: 제정안 시행일이 2026년 7월 1일이므로, 2026년 위원회 회의개최횟수는 1/2만 반영

주2: 단수 조정에 따른 합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나. 각종 계획 수립(안 제41조의11, 안 제64조의2 및 안 제67조의2)

- 안 제41조의11에 따른 특화산업도시 통합육성 기본계획, 안 제64조의2에 따른 국제물류진흥지역기본계획 및 안 제67조의2에 따른 외국인 근로자 지원 계획 수립에 소요되는 비용은 2024년 대전광역시의 “대전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및 추진계획” 수립 연구용역 예산 금액 5,700만원을 준용하여 추계함⁵⁾

5) 「대전충남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수도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의안번호: 2213471)」에 대한 비용추계서 상 계획 수립 비용

- 추계의 전제에 따라 특화산업도시 통합육성 기본계획은 2026년과 2029년에 비용이 발생하며, 국제물류진흥지역기본계획 및 외국인 근로자 지원 계획은 추계 첫해인 2026년에만 비용이 발생하는 것으로 가정
- 개정안에 따라 특화산업도시 통합육성 기본계획 등 3개의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6년에 1억 7,100만원 등 5년간 2억 2,800만원으로 추계됨

[표 3] 각종 계획 수립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6~2030년

(단위: 백만원)

구분	2026	2027	2028	2029	2030	합계
특화산업도시 통합육성 기본계획	57	-	-	57	-	114
국제물류진흥지역 기본계획	57	-	-	-	-	57
외국인 근로자 지원 계획	57	-	-	-	-	57
합 계	171	-	-	57	-	228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다. 추계 결과

- (일부추계) 개정안에 따라 위원회를 설치하고 각종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6년 1억 8,100만원 등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 동안 총 3억 1,400만원으로 추계됨

[표 4]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6~2030년

(단위: 백만원)

구분	2026	2027	2028	2029	2030	합계
위원회 설치	10	19	19	19	19	86
각종 계획 수립	171	-	-	57	-	228
합 계	181	19	19	76	19	314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IV. 부대의견

- 본 추계 결과는 추계가 가능한 일부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만 유사사례를 준용하여 추계한 것으로, 전체적인 재정소요액은 추계된 금액을 상회할 수 있음

V.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행정비용추계과	전상욱	김안나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전상욱	02-6788-4673	flyhigh@assembly.go.kr